

	()개월 이상 ()개월 미만인 경우 ()%, ()개월 이상인 경우 ()%를 적용합니다. 다만, 통장회전대출과 당좌대출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 단일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u>중도상환수수료율은 ()%로 적용합니다.</u>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로부터()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u>중도상환해약금률 : ()%</u>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미징구 표시명 확화
8. 이자 및 지연 배상금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화대출을 포함한 외화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거래, 상관습에 따릅니다.		약정한다 미사용수수료	약정한다 미사용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다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다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x 운용기간÷365(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 <input type="checkbox"/> <u>징구</u> <input type="checkbox"/> <u>미징구</u>	
9.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징구 <input type="checkbox"/> 미징구 제4조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		여신행행방법	여신행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0. 약정 한도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징구 <input type="checkbox"/> 미징구 제5조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약정한다미사용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약정한다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다 -전월 운용평잔)×약정한다미사용수수료율×전월 중 운용일수 /원화대출은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 약정한다미사용수수료율 : ()% (한도소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매월 첫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상 환 방 법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1 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원리금분할 상환 표시 추가
11. 여신행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에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2.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에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13.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p>	<p><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p> <p><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기타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p> <p>① 제 1 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u>단기코픽스금리에</u>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u>(추가)</u>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p>	<p><u>①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u></p> <p><u>②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u></p> <p><u>③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u></p> <p>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p> <p>① 제 1 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u>지표금리에</u>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u>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u>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 개월물</p>	<p>-구외환 문구 추가</p> <p>- 명칭 변경</p> <p>-LIBOR금리 설명</p>
-------------------------	--	---	--	---

- ①외부자금대여기관(한국은행 등 정부기관 및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차입 비율 또는 차입이율이 변경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차용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한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

<p>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 수익률,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 단기 COFIX,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p>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마다 변경합니다.</p> <p>나.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수익률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변경 합니다.</p> <p>다.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기간별 KORIBOR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라. 단기 COFIX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전국 은행 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마.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p>	<p>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추가)</p> <p>2. 이 약정서의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 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 (추가)</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 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p>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p> <p>나.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p> <p>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p> <p>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추가</p> <p>-LIBOR금리 설명 추가 및 시인성 증진을 위해 세 무항목 분류</p>
--	--	---	---

<p>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기간별 잔액기준 COFIX, 기간별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 합니다.</p> <p>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은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1개월, 3개월, 6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 (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② 고정금리대출에 적용하는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자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 하는 대표적인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p> <p>1. 원화대출의 경우</p> <p>가.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 CALL 금리, CD유통수익률,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국고채 유통수익률</p> <p>나. 산출방법 : 여신실행일의 직전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한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p> <p>* 보간법 : 기준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유통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p> <p>2. 외화대출의 경우</p> <p>가. 기간별, 통화별 LIBOR</p> <p>나. 산출방법 : 여신실행일의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 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기</p>			
---	--	--	--

<p>간별, 통화별 LIBOR를 적용하며, LIBOR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p> <p>③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리를 의미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적용하기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원화대출의 고정금리대출에 적용하는 기간별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1-한국은행 차입비율)+(한국은행 차입이율×한국은행 차입비율)] <p>④ 당좌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대출 실행 건별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p> <p>⑤ 내국수입유산스 LIBOR는 여신실행일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1월, 2월, 3월, 6월의 LIBOR를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LIBOR를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제4조 중도상환수수료(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숫자”를 적습니다.)</p> <p>①본인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 이전에 상환(이하“중도상환”이라 합니다.)하는 때에는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p>1.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p> <p>2.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일로부터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다만,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대출개시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합니다.</p> <p>3. “대출기간”은 대출약정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3년</p>	<p>제3조 중도상환수수료</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p> <p>1.« 대출잔여일수 »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p> <p>2.« 대출기간 »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p>	<p>제3조 중도상환해약금</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p> <p>1.« 대출잔여일수 »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p> <p>2.« 대출기간 »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p>	<p>-중도상환해약금 명칭변경</p>
--	--	--	----------------------

<p>초과시 최장 3년으로 계산합니다.</p> <p>② 분할상환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대출금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며, 먼저 기일 도래하는 분할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포함)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2. 대출잔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3.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는 경우 4.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5.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 등과 같이 은행과 본인이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 6. 예, 적금 담보대출(예적금, 금전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 대출)의 경우 7. 기타 은행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p>제3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본인은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p>	<p>3.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p> <p>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p>제4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p>	<p>3.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p> <p>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p>제4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p>	
--	--	--	--

<p>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8조 차용총액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p> <p>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p> <p>② 적금대출 및 상호부금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p> <p>제9조 감액·정지</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p>	<p>하기로 합니다.</p> <p>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p> <p>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p> <p>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p> <p>제6조 감액·정지</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p>	<p>로 합니다.</p> <p><u>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u></p> <p>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p> <p>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p> <p>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p> <p>제6조 감액·정지</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p>	<p>-구외환 문구 추가</p>
--	---	---	-------------------

<p>변동이 발생한 경우</p> <p>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p> <p>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p> <p>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p> <p>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p> <p>라. 신문,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p> <p>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p> <p>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어져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없애기로 합니다.</p> <p>제5조 약정한다도 미사용수수료(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 에 “숫자”를 적습니다.)</p> <p>①본인은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미사용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p>1. 산식 : (약정한다도 - 전월 운용평잔) × 수수료율 ()%(한도소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전월 중 운용일수/원화대출은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p> <p>2. 전월 운용평잔의 계산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 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적수를 전월 중 운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p>	<p>변동이 발생한 경우</p> <p>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p> <p>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p> <p>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p> <p>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p> <p>라. 신문,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p> <p>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p> <p>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p> <p>제7조 약정한다도 미사용수수료</p> <p>①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다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p> <div data-bbox="712 1233 1328 133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p> </div> <p>2. 제 1 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 여신에 대한「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p>	<p>동이 발생한 경우</p> <p>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p> <p>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p> <p>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p> <p>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p> <p>라. 신문,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p> <p>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p> <p>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p> <p>제7조 약정한다도 미사용수수료</p> <p>①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다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p> <div data-bbox="1355 1233 1948 133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p> </div> <p>2. 제 1 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 여신에 대한「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p>	
---	--	--	--

<p>3. 한도소진율은 운용평잔을 약정한도로 나눈 율을 말합니다.</p> <p>4. 전월 중 운용일수의 계산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p> <p>②미사용수수료는 매월 첫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가 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여신 및 동 여신의 한도 내 개별여신에 대해 신규 및 연장 등의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3.「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p> <p>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p> <p>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3.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p>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3.「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p> <p>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p> <p>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3.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p>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제10조 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p> <p>① 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원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통장대출실행지정계좌 및 당좌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원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이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기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② 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p>	<p>제8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p>	<p>제8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p>	

<p>로 하며, 여신한도 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④ 여신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계좌에 부족금액을 곧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⑤ 당좌대출의 경우, 원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은행이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본인은 이를 대출금채무로 삼아 원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9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p> <p>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약정기한 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약정기한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원약정이 적용됩니다.</p> <p>제6조 인지세의 부담</p> <p>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p>	<p>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6 조에 의한 감액·정지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없기로 합니다.</p> <p>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p> <p>제9조 인지세의 부담</p> <p>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p>	<p>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6 조에 의한 감액·정지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없기로 합니다.</p> <p>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p> <p>제9조 인지세의 부담</p> <p>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p>	
---	--	--	--

<p>곧 갚기로 합니다.</p> <p>제11조 상환통화 및 환율</p> <p>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p> <p>제7조 담보·보험</p> <p>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p> <p>제14조 담보권 설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p> <p>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p> <p>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p>	<p>곧 갚기로 합니다</p> <p>제10조 상환통화 및 환율</p> <p>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p> <p>제11조 담보·보험</p> <p>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p> <p>제12조 담보권 설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p> <p>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p> <p>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p>	<p>갚기로 합니다</p> <p>제10조 상환통화 및 환율</p> <p>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p> <p>제11조 담보·보험</p> <p>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p> <p>제12조 담보권 설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p> <p>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p> <p>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p>	
--	---	---	--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 별	증서 기· 번호	명의 인토 는 위 탁자	금 액 (계약 액)	20... 까지 입금 누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계좌 번호	수익 자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 하기로 합니다. 그 밖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비율	%				
()비율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 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 별	증서 기· 번호	명의 인토 는 위 탁자	금 액 (계약 액)	20... 까지 입금 누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계좌 번호	수익 자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비율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 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 별	증서 기· 번호	명의 인토 는 위 탁자	금 액 (계약 액)	20... 까지 입금 누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계좌 번호	수익 자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				
()비율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 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p>1.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p> <p>③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지배주주의 출자 3.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 또는 각 목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제12조 자료의 제출 등</p> <p>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p>	<p>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p> <p>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제14조 자료의 제출 등</p> <p>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p>	<p>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p> <p>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p> <p>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p> <p>제14조 자료의 제출 등</p> <p>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p>	
---	---	--	--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
 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
 고 이해하였음.

- 약정내용과 관련한 여신취급 내용(신규,연장)의 서
 면통지 생략 여부 : 생략함 생략하지 않음

본인 (인)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본인	(인)
--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
 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인)

	본인	(인)
--	----	-----

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본인	(인)
--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
 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인)

	본인	(인)
--	----	-----